

2005. 4 국회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1. 북한인권문제의 본질과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?

- 북한인권문제의 본질은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인권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인간 생존권 차원의 인권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음
-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,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
-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각국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·선택할 수 있다고 봄
-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,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·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며,
 -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2. 참여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인권실태는?

- 북한 인권상황은 정보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나, 관련자료에 따르면,
 - 북한주민의 전반적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하며, 각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 - ※ 미 국무부 세계인권보고서('04)에서는 고문, 실종, 자의적 처형, 강제 수용소 운영 등 제반 인권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, 북한을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국가로 평가
-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발표되는 자료로는 통일연구원의 「북한인권백서」, 미 국무부의 「세계인권보고서」 등이 있으며, 각각의 2004년판본을 별첨함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3. 공개처형까지 서슴치 않는 북한내의 인권실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?

- 북한 내 공개처형에 관한 주장은 기왕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,
 -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하여 정부도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북한체제의 특성상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.
- 동영상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음.
 -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스스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
 -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.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4. 유엔인권위 제61차회의에서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한 '북한인권보고서'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?

- 문타폰 보고관은 동 보고서에서 △ 북한이 4개 인권협약에 가입하고, △ 간헐적이지만 UN기구의 입국조사를 허용하며, △ 시장조치 등을 취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
 - 여전히 식량권, 생존권, 정치범수용소, 거주·이전의 자유, 언론의 자유 등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등을 권고 하였음
- 이 보고서는 UN인권위가 최초로 임명한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의견과 정책건의를 담은 공식보고서(3.29 보고)라는 점에서
 - 향후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준거로 사용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

< 문타폰 보고서 주요내용 >

- 북한이 4개 인권협약에 가입하고, 간헐적이지만 UN기구의 입국조사를 허용하며, 외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
-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은 권력구조, 군비감축, 시장경제화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
- 여전히 식량권, 생존권, 정치범 문제, 수용소, 거주이전의 자유, 언론의 자유 등에서 광범위하고 우려할만한 인권침해 지속
- 북한은 이의 개선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사법제도의 투명화, 피의자와 수형자의 처우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
- 탈북자 보호강화와 강제송환 금지 및 임시보호처 마련, 탈북자를 위협하게 하는 양자협정 폐기 등을 권고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5. '북한인권의 객관적 실체파악이 부재하며, 북한인권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'는 주장에 대한 입장 및 견해는?

-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인 논의와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
- 그러나 정확한 실상 파악이 당장 어렵더라도, 북한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,
 - 실상파악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들을 함께 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
-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등 북한인권의 점진적,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6. 향후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?

- 북한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변화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봄
- 따라서,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한편,
 - 탈북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으며,
 -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.
- 또한,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6자 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7. 2005년도 유엔인권위원회의 '북한인권결의안' 표결시 한국정부의 참여여부는?

-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4.14(목) '북한인권결의안'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으며,
 - 그 결과, 53개 회원국중 찬성 30표, 반대 9표, 기권 14표로 통과되었음
 -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표결에서는 기권하였으며, 투표전 입장설명 기회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
- ※ 입장표명 주요내용
-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함께함
 -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, 북한인권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함

김성조 의원(한나라당)

8. 일본의회에서 추진중인 '북한인권법'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?

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'북한인권법'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지?

-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인해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
 - 민주당이 납치문제 조기해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「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」을 참의원에 제출(2.25)한데 이어 자민당도 「북한인권법안」요강을 작성 완료(2.15)한 것으로 알고 있음
 - 그러나, 동 법안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자민당내에서도 신중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
- 정부는 동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으나,
 - 동법안의 입법화가 본격 개시될 경우,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관계 진전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.

서면질의 답변 목록

(국가인권위원회)

질의 위원	질의 요지	비고
김성조 위원	<p>1.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,</p> <p>1-1. 북한인권문제의 본질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은?</p> <p>1-2. 인권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는?</p> <p>1-3.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북한의 공개처형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음.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?</p> <p>1-4. 제61차 유엔 인권위에 보고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'북한인권보고서'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인권의 입장은?</p> <p>1-5. '북한인권의 실제파악이 부재하며, 북한인권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'는 주장에 대한 인권위 입장은?</p> <p>1-6. 북한정권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소극적 이유를 들어 북한의 인권참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. 향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?</p> <p>2. 사형제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,</p> <p>2-1.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대신할 '가석방 없는 종신형제'가 인권에 부합한다고 보는지?</p> <p>2-2. 인권위 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형제 존폐와 관련한 논의 경과 내역은?</p>	

2-3. '형벌에는 교화뿐만 아니라 응보의 측면이 있다.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하다'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?

2-4. 사형제 폐지문제와 관련 개최된 지난달 28일 전원 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 위원의 의견은?

3. 열린우리당 이부영 前의장의 진정 접수와 관련하여,

3-1. 이부영 전의장 관련진정은 진정을 제기할 만한 사안인지?

3-2. 위 진정은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인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의 각하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지?

3-3. 이 사안을 직권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?

3-4.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, 다른기관으로 이첩시키는 것이 인권위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?

김성조 위원(한나라당 경북구미갑)

1-1. 북한인권문제의 본질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?

□ 북한인권문제의 본질

- 북한인권문제는 보편성, 불가분성,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
 - 따라서 북한인권 역시 그 특수성보다는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논의될 수 있으며,
 - 그 논의에 자유권, 사회권, 발전권 등 관련 인권 영역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으며,
 - 북한인권은 한반도 평화 증진, 남북화해 협력, 북한의 개혁개방 등 다른 관련 사안들과 상호의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향후 대응방향

-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입장을 연구·수립하겠습니다.

1-2.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인권위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인권 실태는 어떠합니까?

□ 북한인권 실태

- 우리 위원회는 북한인권 실태파악을 위해 간담회, 심포지엄, 해외 출장 등을 실시해왔습니다.
 - 여기에는 북한내 인권, 재외탈북자의 인권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
 -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파악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자 합니다.

1-3.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북한의 공개처형과 관련, 모든 국민들은 북한내에서의 인권유린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으며, 어느 때보다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. 그렇다면 공개처형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 내의 인권실상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?

□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

-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- 공개처형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서라도 근절되어야 하며,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

1-4.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유엔인권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위트니스 문타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'북한인권 보고서'의 내용은 무엇이며,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?

□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'북한인권보고서'에 대한 입장

- '북한인권보고서'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지만,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과 연대가 우리 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므로,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존중함

※ 붙임.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'북한인권보고서' 요지

<붙임>

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 요지

2005년 1월 10일

비티 문타폰(Vitit Muntarbhorn)

□ 북한 인권 상황

○ 긍정적인 요소

- 북한은 4대 국제조약(시민적·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,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, 아동권리협약, 여성차별철폐협약) 가입당사자
- 외부 국제사회 인권활동가들의 북한입국 간헐적 허용
- 북한 내 다양한 인권기구들의 활동 허용 및 국제적 인정
- 인권보호와 신장에 대한 법적·조직적 토대 존재 등

○ 기본적 맥락

- 연좌제, 비민주적인 중앙집권화,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등 평화와 안보 문제, 이로 인한 탈군사화 및 탈무장의 난제 잔존, 하향식 계획경제의 잔재와 주체사상의 폐해,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식량난으로 인한 총체적 문제점 잔존 등

○ 구체적 과제

- 식량권 및 생명권 미흡
- 개인안보, 인도적인 처우, 차별, 재판접근권 침해 우려
- 거주이전의 자유 및 실향민(탈북자) 보호 조치 미흡
- 건강권 및 교육권 미흡
- 자결권, 정치 참여, 정보접근권, 표현·신념·의사, 집회·종교의 자유 미흡
- 특정 개인·집단의 권리: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미흡

□ 북한에 대한 권고

- 가입한 4대 인권조약을 준수하고 다른 관련 조약 수용할 것
- 법과 관행을 국제인권기준과 일치시킬 것
- 민주주의 및 인권 보장, 평화, 지속가능한 발전, 탈군사화 수용할 것; 정책 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 보장
- 법치주의 준수, 사법부 독립, 구금자 보호, 재판접근권 및 시민사회 참여,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
- 사법부 개혁, 구금제도 개선, 사형제도 및 강제노동 폐지, 정치범 수용과 같은 수용시설 폐지
- 실향(탈북) 대책 마련, 송환자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
- 외국인 납치 관련 문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
- 국가인권정책(NAP) 수립 등을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
- 식량원조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배분의 투명성 확보
- 인권 현황 조사 및 개혁 관련 조언을 위해 특별보고관 등의 북한 초청
- 인권 신장 보호 위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적 지원 요청

□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

- 북한이 위 권고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
- 탈북 난민 보호,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, 임시수용소 설치, 망명자들의 생존권 위협요소 제거 등
- 인도적 기구들의 접근성 보장 - 투명한 모니터링 및 책임성 제고로 취약집단에 원조와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

1-5. “북한인권의 객관적 실체파악이 부재하며, 북한인권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”는 주장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?

- 북한인권의 실체파악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
 - 북한인권 실체파악은 입장 표명에 앞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나, 지금까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많은 보고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 - 물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추이 변화나 교차 확인은 계속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 -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, 내부의 논의 절차를 거쳐 북한인권 관련 입장 표명을 준비할 것입니다.

1-6. 언제까지 북한정권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소극적 이유를 들어 북한의 인권참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. 향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?

□ 북한인권 문제해결 방안

-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습니다.
 -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장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-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은 유엔과 관련국들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극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북한의 인권개선은 생존권, 정치적 자유 등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동시에, 북한의 협력 유도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.

김성조 위원(한나라당 경북구미갑)

2-1.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대신할 '가석방 없는 종신형제'가 인권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

- 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시 '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'가 인권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.
- 다만, 위원회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감형·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, 일정기간 감형·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,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형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.

2-2. 인권위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제 존폐와 관련한 논의의
경과 내역은 무엇입니까?

계획수립

- '03. 5. : 생명권 관련 쟁점별 현황과 인권위의 대책 수립
- '03. 6. : 사형제도 검토 기본계획 수립
- '03. 7. : 사형제도에 관한 의식조사 계획 수립

의식조사

- '03.12. : 사형제도의 국민의식조사 완료

간담회 및 청문회

- '03. 3. : 사형제도의 쟁점검토(간담회)
- '04. 4. :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

검토보고서 작성

- '04. 8.~10. 검토보고서 작성

위원회 개최

- '04. 11. 22. : 04년 제33차 제1소위원회 논의
- '04. 12. 13. : 04년 제23차 전원위원회 논의
- '05. 3. 14. : 05년 제6차 전원위원회의 논의
- '05. 3. 28. : 05년 제7차 전원위원회의 논의
- '05. 4. 6. : 05년 제8차 전원위원회의 의결(의견표명)

2-3. “형벌에는 교화뿐만 아니라 응보의 측면이 있다.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하다”는 의견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?

- 우리 위원회 의견표명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.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-4. 사형제 폐지문제와 관련 개최된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 위원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?

- 우리 위원회 의견표명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.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김성조 위원(한나라당 경북구미갑)

3. 열린우리당 이부영 前의장의 진정 접수와 관련하여,

3-1. 이부영 전의장 관련진정은 진정을 제기할 만한 사안인지?

3-2. 위 진정은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인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인권 위법 제32조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?

3-3. 이 사안을 직권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?

3-4.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,

다른기관으로 이첩시키는 것이 인권위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?

3-1번 관련

○ 검찰이 진정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진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.

○ 따라서,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습니다.

3-2번 관련

○ 법원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은 정치자금관련법 위반사안이며, 위원회 진정은 피의사실 공표관련 사안으로 별개의 사안입니다.

3-3번 관련

○ 이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며, 이미 진정이 접수 되었으므로 위원회법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중에 있습니다.

□ 3-4번 관련

-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인권위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, 이첩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.
- 참고로,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'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' 등에 한해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